



제1644호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1837 호 남동구청립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감 사 실 2
○ 조	례 제 1838 호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감 사 실 6
○ 조	례 제 1839 호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전 총 괄 과 8
○ 조	례 제 1840 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전 총 괄 과 13
○ 조	례 제 1841 호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문 화 관 광 과 16
○ 조	례 제 1842 호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문 화 관 광 과 22
○ 조	례 제 1843 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체 육 진 흥 과 37
○ 조	례 제 1844 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체 육 진 흥 과 41
○ 조	례 제 1845 호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노 장 애 인 과 44
○ 조	례 제 1846 호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여 성 가 족 과 51
○ 조	례 제 1847 호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여 성 가 족 과 55
○ 조	례 제 1848 호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여 성 가 족 과 61
○ 조	례 제 1849 호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 동 복 지 과 65
○ 조	례 제 1850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 소 행 정 과 70
○ 조	례 제 1851 호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 시 경 관 과 76
○ 조	례 제 1852 호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 시 경 관 과 79
○ 조	례 제 1853 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도 시 경 관 과 82
○ 조	례 제 1854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 통 행 정 과 85
○ 조	례 제 1855 호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건 설 과 88
○ 조	례 제 1856 호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건 강 증 진 과 93

회 람								
--------	--	--	--	--	--	--	--	--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37호

남동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남동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2. 청렴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남동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문화 조성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 (안 제3조~제4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 (안 제6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38호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제16조”를 “제21조”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를
“남동구”로, “19세”를 “18세”로, “20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동구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19세 이상의 자로서 200명’을 ‘18세 이상의 자로서 150명’으로 완화 : (안 제2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39호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

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제공 또는 소요비용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
· 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
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
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임시거처 제공기간	. . . ~ . . . (일)		제공 객실 수*	*2인 1실 기준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	숙 소 명			
	숙소주소			
	화재일시		가족구성원	명
	화재장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업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시
거처 비용(제공)을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화재 증명원 1부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 안 제4조
- 지원의 종류 및 유관기관 협력지원 : 안 제5조, 제6조
- 임시거처 지원 : 안 제8조
- 지원신청 : 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0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제3조제1항 중 “사고가 있”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협의회에 부의할” 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의 원활한 조직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6항 반영하여 협의회의 기능 보완 : (안 제2조제1호)
- 변경된 부대명칭 현행화 : (안 제3조제2항제7호)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화상회의 방식 추가 : (안 제4조제6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1호

남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10조(예술활동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남동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

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복지증진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제2조
- 책무 :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사항 : 안 제5조, 제6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사항 : 안 제7조, 제8조
- 예술활동 공간지원,예술인 참여지원에 관한사항 : 안 제10조, 제11조
- 문화예술활동 후원연계,지원의 중단에 관한사항 : 안 제12조, 제1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2호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민의 문화향유의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기본법」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설치와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제4조(지역문화예술의 진흥)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2. 전문예술법인·단체 활동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과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시설 및 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시설 운영 및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화시설 및 행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남동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7조(남동문화재단의 설립)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

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남동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임원)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내부규정)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내부규정을 제정·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설치 및 명칭)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 및 서비스 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18조(시설의 이용허가) 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의 기준과 금액은 별표 1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허가는 취소 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납부된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며 그 외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료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이용예정일 3일 이전 신청인이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21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종교 및 정당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2조(시설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구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구성) ① 구청장은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남동구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예술단에는 여성합창단, 풍물단 등을 둘 수 있다.

③ 예술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여성합창단은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풍물단은 예술감독 1명,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남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단장과 단원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술감독 및 지휘자,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공연 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③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

제27조(단원의 위촉) ①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는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을 거쳐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기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부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 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단원의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1.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
2.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2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제31조(미술작품 구입)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미술작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사진·서예 등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32조(구입미술작품 전시·관리) 구입미술작품은 전시가 필요한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시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

제33조(축제개최) 구청장은 남동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발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축제운영)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35조(축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 담당국장과 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문화·예술·관광·축제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정·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40조(축제에 대한 평가 및 결산) ①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8조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남동구 여성합창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남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남동구 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4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 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존속기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남동문화재단의 설립준비)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을 위한 직원채용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제19조 관련)

구 분	기 준	이용료	비 고
다목적홀	3시간	10,000원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학습공간	3시간	10,000원	
방음공간	3시간	10,000원	
마루공간	3시간	10,000원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기관 및 시설의 설치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례를 신설·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 : 안 제1조 ~ 안 제3조
- 제2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 안 제4조 ~ 안 제6조
- 제3장 남동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 안 제7조 ~ 안 제15조
- 제4장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안 제16조 ~ 안 제23조
- 제5장 구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 : 안 제24조 ~ 안 제30조
- 제6장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 안 제31조 ~ 안 제32조
- 제7장 축제의 육성 및 지원 : 안 제33조 ~ 안 제4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3호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체육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중 “설치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구민체육진흥계획”을 “체육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남동구청”을 “남동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제12조제1항 중 “10명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 체육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인사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체육진흥인사위원회

제19조(체육진흥인사위원회) 체육 인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선수 및 남동구 꿈나무 스포츠단의 감독, 코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중 임기가 남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 12. 8.)에 따라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의 제목 등 정비 : 안 제3조, 제10조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고려해 일부조항 신설·수정 및 삭제 : 안 제11조, 제19 ~ 23조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반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 안 제18조 삭제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4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
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7호) 중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과”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
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9호)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면 할”을 “감면

할” 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조례”를 “조례 및 계약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철회된 자는 2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기획정비를 적용하여 공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정비 : 안 제10조
- 위탁의 철회에 관한 규정 정비 : 안 제14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5호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

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이용인”이란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1번지 일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 받은 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2. 이용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3. 이용인 보호자 교육·상담 및 홍보사업
4. 이용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연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이용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평생교육센터 이용대상은 남동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과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으로 하며, 각각 100분의 50으로 모집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이 100분의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남동구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으로 모집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사람
2.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이용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이용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후원금 등 모든 재산을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가된 재산은 남동구 재산으로 귀속한다.
-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

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을 남동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및 평생교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

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따르고, 그 외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특별한 제한이나 자격조건 없이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사회참여 촉진
- 1)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추진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등 정의 : (안 제2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안 제3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 : (안 제4조)
- 이용대상, 이용제한 및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 (안 제5조부터 제7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에 관한 규정 : (안 제8조, 제9조)
- 자체 운영규정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 : (안 제10조, 제11조)
- 지도·감독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규정 : (안 제12조, 제1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6호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7호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동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남동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

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한부모가족 상담·심리치료 지원 연계
4.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5.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8호

남동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범위, 조직 및 운영,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범위)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2. 지역 내 위기청소년 현황 조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무
3.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에 관한 사무
4. 위기청소년 통합사례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무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전담기구를 청소년 담당 부서의 팀 조직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구에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공무원은 전담기구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전담기구의 명칭은 “청소년안전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전담기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구청장은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에게 법령 및 예산에 근거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무범위 : 안 제2조
- 조직 및 운영 : 안 제3조
- 전담공무원의 임용 : 안 제4조
- 수당 등 : 안 제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49호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아동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남동구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구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제1항,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20명”을 “40명”으로 한다.

제23조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6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실무추진단

제29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 관련 각 부서의 장이 된다.

제30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아동참여기구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 발전 개선방안 제시

제31조(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29조를 제3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권리”에 대한 정의 내용 개정(구체적 명시) 및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정의 추가 (안 제2조제3호~제5호)
-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 추가 (안 제15조제2항~제5항)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정기회의 횟수 확대 (안 제19조)
-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수 및 정기회의 횟수 확대 (안 제22조제1항, 안 제23조)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인원수 확대 (안 제27조제1항)
-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운영 근거 마련 (제6장, 안 제29조 ~ 제3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50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재활용가능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활용가능품”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을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재활용품”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 및 제9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가지런히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노트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하고 말린 후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상자류 (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2.병류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 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찢겨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 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 기류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 농약병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뚜껑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3.캔류	○ 철 캔, 알루미늄 캔 (음료수, 통조림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노즐을 눌러 배출 하거나 통에 구멍 뚫기)한 후 배출
4.금속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극 스테인리스, 전선, 알루미늄, 사슴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5.플라스틱류	○ 무색 투명 PET병 (생수, 음료수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일회용 비닐류 (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과자봉지, 라면봉지, 커피봉지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 질을 제거하여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장판 제외
6.의류	○ 면의류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 의류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7.농업용 폐비닐류	○ 농업용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 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 · 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
8.폐건전지류	○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
9.폐형광등류	○ 폐형광등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10.스티로폼류	○ 스티로폼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 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 투 또는 가정사업계폐기물봉투에 배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 1462호, 2020.12.25.)상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과 「남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제1항의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의 통일성을 위하여 배출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비하고 조례 내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코자 함

□ 주요내용

-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정비 : 별표 2 개정
 - 투명 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을 세분하고 배출요령 추가
- 재활용가능품, 재활용품,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혼용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통일하여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51호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지역의 특성”을 “지역별·성별·연령별의 특성 등”
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제1호 중 “공공디자인 관
련”을 “도시디자인 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된다”를
“된다.”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 일부 조항 현행화를 통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 : (안 제5제2항제2호)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기준 정비 :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 시행규칙 조항 삭제 : (안 제2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52호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 목 중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를 “조각·공예”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벽화·분수대·폭포” 를 “분수대·폭포” 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본문 중 “7일” 을 “60일” 로 한다.

조례 제1663호 남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제11조” 를 “제12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부 조항 정비를 통하여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시 조례에 따라 용어 정비 : (안 제2조)
- 공공조형물 심의 대상 추가 : (안 제7조제2항제3호)
- 상위법령 위반 조항 정비 : (안 제11조제1항)
- 부칙 조항 정비 : (부칙 제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53호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을 “예방·방어적인 구조
로 조성·변경·개선하는” 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배치한다” 를 “배치하여 주민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조성한다”를 “조성·유지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제16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자치법규 일부개정을 통하여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범죄에 대한 적극적 예방 내용 포함 : (안 제2조제1호)
- 주민의 안전성 형성을 위하여 사업의 지속적 유지관리 내용 추가 : (안 제3조제4호, 제7조제1항제4호)
-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내용 추가 : (안 제5조제1항제5호)
-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용어 정비 : (안 제1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54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중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해당시설 이용당일 최초이용시간부터 3시간 범위내 면
제 (단, 지정된 주차장에서 이용정원 내 감면시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아이사랑꿈터는 육아공동체 활성화 및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육아·공동돌봄을 위해 구청장이 운영하는 시설로써, 그 중 일부 시설이 부설주차장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이 있으므로 공영 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통해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이사랑꿈터 이용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 3시간 면제 (안 제5조 제4호 다목 신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55호

남동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
2.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 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 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

-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 확보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한 정비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

제7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 설치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 시행

제8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주민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 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조례의 정의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구민의 권리와 협력 (안 제4조)
-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안 제5조)
-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안 제6조)
- 보행자의 안전시설 설치 (안 제7조)
- 예산의 확보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11월 09일

남동구 조례 제1856호

남동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

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남동구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제2호의1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제2호의 2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무원/보호자용) : 별지7호 및 7호의1
4. 의사 소견서 및 가발구입비 영수증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을 지원함으로써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높여주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